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42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최은석·박덕흠·김종양

박충권 • 이인선 • 조지연

박상웅 • 박정하 • 조승환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으로부터"를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에게"를 "사람 또는 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람에"를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에게"를 "사람 또는 법인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별"을 "기부자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으로부터"를 "주민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	1
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
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	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금전을 말한다.	<u>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u>
	<u>.</u>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2
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	
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	
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u>사람에게</u> 의뢰	사람 또는 법인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u>에</u>
말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	주체 및 대상) ①

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이 아닌 <u>사람에</u> 대해서만 고 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u>사람</u> (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u>개인별</u>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
 - ④ (생 략)

<u>사람 또는 주된 사무</u>
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
<u>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에</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
지) ①
사람 또는 법인에
<u> </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현행과 같음)
(2)
<u>/</u>
③ <u>기부자별</u>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주민으로부터</u>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 7. (생략)

② (생 략)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1
<u>주민</u> 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으
로부터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